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광성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베란다형, 주택형, 건물형 태양광 설비 등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,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등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